‘22.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

○ ’22. 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**‘22.7.6(수)~7.21(목)** 기간 중 **관할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금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** 사업주께서 **EPS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택**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규 외국인력은 **「점수제」 방식**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,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.

○ **결과발표는 8.9(화) 14:00, 16: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** 안내해 드리고,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**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**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**방문 일자 및 시간도 지정**해 드리니,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EPS홈페이지(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해)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* 고용허가서 발급일자: 제조업 8.10(수)~8.18(목)
농축산업・어업・건설업 8.19(금)~8.23(화)

○ **(하반기 신규 배정계획 변경)** ’22년 7월과 10월에 신규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, 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**‘22년 하반기는 7월에만 신규배정이 실시됨**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**10월 배정은 원칙적으로 미실시**하며, 7월 발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「’22.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」 참조

고 용 노 동 부

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

붙임 '22.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

□ **해당업종 :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**

□ **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: '22.7.6(수)~7.21(목)**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<u>내국인 구인노력</u>을 거쳐야 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인터넷(www.eps.go.kr)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☞ 유의사항

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**구인신청은 지방관서(워크넷)를 통해 하셔야** 내국인 채용 시 **가점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**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**

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**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** 합니다.

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④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용)**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외국인근로자를 **센터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
-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·사업장시설(업무내용)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① (기숙사 시설표) 고용허가 신청 시 '외국인 기숙사 시설표*'와 함께 증빙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**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 입력)

*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(전 업종 적용)

*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기숙사 시설표

-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, 사업장 건물,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"가설건축물 신고필증" 또는 "건축물대장" 등을 제출

-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

② (사업장 시설) 사업장 전경,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*)

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

**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

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: 7.26(화)~8.8(월)

○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.

*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

○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,

-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,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.

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: 8.9(화) 14:00, 16:00

○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,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* 안내 방법: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

□ 고용허가서 발급: 제조업 8.10(수)~8.18(목)

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 8.19(금)~8.23(화)

○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,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,

-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·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기순번 처리

○ 고용허가서 취소·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○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

❖ **'22년 하반기 점수제 신설항목:** 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(노동부고시제2021-117호, '21.12.28.)의 지원대상 사업장(10점, '22년 하반기 한시 적용)

❖ **'22년 하반기 점수제 폐지항목:** 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(3차) 완료사업장 가점(2점, 2분기 한시적 적용), ②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 사업장 가점(2점, 법정시행일 경과), ③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불이행 사업장 감점(10점, 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 등)

□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～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19.2월～7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～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제조업: 19～20점, 소수업종: 15～20점)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제조업: 14～20점, 소수업종: 18～20점) 높은 점수 부여

□ **가점 항목 (7개)** ①농축산업・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(0.5～2.5점), ②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), ③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2.5점), ④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), ⑤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.5점),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1.5점) ⑦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117호, '21.12.28)의 지원대상 사업장(10점, '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)

□ **감점 항목 (9개)**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(10점)②성폭행, 폭행, 폭언, 성희롱,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(성폭행 10점, 성희롱 10점, 폭언・폭행 6점, 임금체불・근로조건 위반 5점),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성희롱 5점, 폭언・폭행 6점, 임금체불・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),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5～5점),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1～5점),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(최대 10점, 1년간 감점),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(미제출)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(각 3점, 1년간 감점),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3점),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(1～5점)

□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: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절차

1. 워크넷(www.work.go.kr)에 내국인 구인노력 실시

워크넷에 구인신청이 올라간 날로부터 **①제조업은 14일, ②농·축산업은 7일** 지나야 함.
단, **벼룩시장·교차로 등 일간지에 추가적으로 구인광고 게재한 사실**이 있는 경우
①제조업은 7일, ②농·축산업은 3일만 지나면 가능함.(구인광고 게재 **증빙서류 지참 필수**)

⇩ ⇩ ⇩

2.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EPS(www.eps.go.kr)로 고용허가 발급 신청

※필요서류: ①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
※EPS 신청시 위 신청서는 필요 없음.
②사업자등록증 (농·축산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③기숙사시설표 (기숙사 미제공시 제출 필요 없음)
※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필히 지참
※소화기, 화재감지기 설치한 경우 각 사진도 지참/첨부
※기숙사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, 그 증명서류도 지참/첨부
④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⑤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
대리인(직원) 방문시 (1)위임장, (2)재직증명서, (3)대리인신분증
대리인(직계가족) 방문시 (1)위임장, (2)가족관계증명서, (3)대리인 신분증

※기타 주의 및 안내사항※

☞ 위 필요서류를 모두 갖췄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중에 내국인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한 사실 등, 법령에 의한 미발급·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☞ 각종 서류 추가제출 및 고용보험 신고사항 정정 등 보완요청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, 신청 반려 또는 점수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
FAX: 0508-8230-0399 / TEL: 033-371-6263

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 1. 10.> EPS시스템(www.ep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([ ]발급[ ]재발급)신청서

*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*접수	접수번호	접수일	처리부서	*선결	청장(지청장)	과장	팀장	담당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주된 사업장 (예:본사)	※사업장이 1개인 경우 1-① ~1-④는 작성하지 않고 2-① ~ 2-⑧을 작성	
	1-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1-②사업자등록번호
	1-③사업장명	1-④대표자

사업장 개요	※사업장이 본사와 구분된 지사 혹은 건설현장의 경우, 각 지사와 현장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		
	2-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2-②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
	2-③사업장명	2-④대표자	
	2-⑤소재지 주소	2-⑥ 연락처	전화번호
			휴대전화번호
			팩스
			전자우편(이메일)
	2-⑦업종	2-⑧사업내용	

⑨ 대행기관	※ 대행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.

구인 사항	※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,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'관계없음'으로 적습니다.			
	⑩구인직종	직종 ( ), 직무내용( ) ※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. (예시 : 딸기 재배,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,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)		
	⑪모집인원	명	⑫국 적	1) 2)
	⑬학 력	최저: 최고:	⑮자격면허	1)
	⑭전 공			2)
	⑯연 령	만 세 ~ 세		
	⑰한국어능력	[ ]상 , [ ]중 , [ ]하 , [ ]관계없음		
	⑱모집 외국인 구분	[ ]신규입국자 [ ]사업장 변경자 [ ]재입국자([ ]지정알선 [ ]일반알선)		
	⑲기타(경력등)			

※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'근로조건'을 적으십시오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<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>

※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. (뒤쪽)

근로조건	⑳근로시간	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	시 분 ~ 시 분 (8시간 기준) * 1일 평균 시간외(연장) 근로시간: ( )시간 * 교대제([ ]2조2교대, [ ]3조3교대, [ ]4조3교대, [ ]기타)		
		농업・축산업・어업	시 분 ~ 시 분, 월 ( )시간 * 농번기, 농한기(어업의 경우 성어기, 휴어기), 계절・기상 요인에 따라 ( )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		
	㉑근로계약기간	신규・(또는 재)입국자	( )개월, * 신규(또는 재)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		
		사업장변경자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㉒휴일	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	[ ]일요일, [ ]공휴일([ ]유급, [ ]무급), [ ]매주 토요일, [ ] 격주 토요일, [ ] 기타		
		농업・축산업・어업	[ ] 주1회, [ ] 월1회, [ ] 월2회, [ ] 월3회, [ ] 기타( ) 농번기(성어기): [ ]주1회, [ ]월1회, [ ]월2회, [ ]월3회, [ ]기타( )		
	㉓휴게시간	1일 (분) * 농업・축산업・어업: 1일 ( )회, ( )시간 ( )분			
	㉔임금 및 지급방법	기본급	월(시간, 일, 주)급: ( )원		
		고정적 수당	(수당: 원), (수당: 원)	상여금	(원)
		수습기간 중 임금	월(시간, 일, 주)급: ( )원,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( )원 (수습기간: [ ]1개월, [ ]2개월, [ ]3개월, [ ] 개월)		
		월 통상임금	( )만원 (시간외 수당 등 제외) *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		
		지급방법	[ ]직접 지불, [ ]통장 입금	지급일	매월 ( )일
	㉕숙식 제공 여부 (숙박)	[ ] 제공	숙박시설 유형	[ ]주택, [ ]고시원, [ ]오피스텔, [ ]숙박시설(여관, 호스텔, 펜션 등), [ ]컨테이너, [ ]조립식 패널, [ ]사업장 건물, 기타 주택형태 시설( )	
			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	[ ] 부 담 (부담금액: 매월 원) [ ] 미부담	
		[ ] 미제공			
	㉕숙식 제공 여부 (식사)	[ ] 제공	제공 시	[ ]조식, [ ]중식, [ ]석식	
			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	[ ] 부 담 (부담금액: 매월 원) [ ] 미부담	
		[ ] 미제공			
	㉖기타				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)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(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) 2.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)	수수료 없 음

유 의 사 항

1.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.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.
4.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고용허가서상의 외국인근로자 구인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2-①~④란과 신청인 성명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
외국인 기숙사 시설표

❖ **작성방법**

- 외국인근로자에게 **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**하여 **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**하여야 합니다.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 제2항)
- 기숙사 내 시설을 **해당 항목별**로 **기재 또는 ☑로 표시**하여 주십시오.
  (화장실, 세면·목욕시설, 난방시설, 냉방시설, 채광·환기시설의 **종류는 중복 체크** 가능)
- **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·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**

❖ **유의사항**

-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**허위 기재**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**사업장 변경** 및 **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**을 적용합니다.
-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**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**는 반드시 **해당 근로자의 동의**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**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** 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❖ **사업주 준수사항(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)**

① **(기숙사 설치 장소) 소음이나 진동**이 심한 장소, **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** 우려, **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,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**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

② **(침실의 구분) 여성과 남성,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** 간에 **서로 다른 침실**을 제공

③ **(침실의 기준) 개인당 2.5㎡ 이상**의 넓이 보장, **1실의 거주인원은** 8**명 이하**

④ **(필수 시설) 화장실 및 세면·목욕시설**, 적절한 **냉·난방** 설비 또는 기구, **채광·환기**를 위한 적절한 설비, **「소방법」 및 관계법령**에 따른 **화재예방** 등 설비 또는 장치, 수납시설 설치

⑤ **(잠금 장치)** 기숙사의 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**적절한 잠금장치**를 설치

① 사 업 체	사업장명		업 종	
	대 표 자		소 재 지	
	사 업 장 등 록 번 호 (생 년 월 일)			

② 주거시설	☐ 주택(단독, 연립, 아파트, 원룸형 주택 등) ☐ 고시원 ☐ 오피스텔
	☐ 숙박시설(여관, 호스텔, 펜션 등)
	☐ 가설 건축물(☐ 컨테이너 ☐ 조립식 패널)
	☐ 사업장 건물 ☐ 기타 ( )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
- **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**에 ☑표시하되,
 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☑표시(예: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원룸형 주택 → 주택)

③ 설치금지 장 소	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
	☐ 산사태,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
	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
	☐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☑표시하되, **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**

④ 침 실	① 남녀구분	□ 남녀 구분 □ 남녀 미구분
	② 근 무 조	□ 근무조 있음 (□ 조별 구분 □ 미구분) □ 근무조 없음
	③ 침실면적	□ 1인별 2.5㎡ 이상 □ 1인별 2.5㎡ 미만
	④ 침실높이	□ 2m 이상 □ 1.5m ~ 2m □ 1m ~ 1.5m □ 1m 미만
	⑤ 거주인원	침실 1개 당 ( ) 명
	⑥ 수납공간	□ 있음 □ 없음
	⑦ 잠금장치	□ 있음 □ 없음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침실구분: **층 또는 벽**으로 **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**
- 근무조: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

⑤ 화 장 실	① 유 무	□ 있음 □ 없음
	② 종 류	□ 수세식 □ 재래식
	③ 위 치	□ 숙소 내부 □ 숙소 외부
	④ 잠금장치	□ 있음 □ 없음

⑥ 세면 및 목욕시설	① 유 무	□ 있음 □ 없음
	② 종 류	□ 입식세면대 □ 샤워시설 □ 욕조 □ 기타( )
	③ 위 치	□ 숙소 내부 □ 숙소 외부
	④ 온 수	□ 온수 사용가능 □ 온수 사용불가
	⑤ 잠금장치	□ 있음 □ 없음

⑦ 난방시설	① 유 무	□ 있음 □ 없음
	② 종 류	□ 보일러 난방(건식온수난방 포함) □ 전기필름·전기패널
		□ 연탄보일러 □ 재래식 온돌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**전기장판,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**

⑧ 냉방시설	① 유 무	□ 있음 □ 없음
	② 종 류	□ 선풍기 □ 에어컨 □ 기타( )

⑨ 채광 및 환기시설	① 유 무	□ 있음 □ 없음
	② 종 류	□ 개폐형 창문 □ 폐쇄형 창문**(환풍기 설치)** □ 기타( )

⑩ 소방시설	□ 소방시설 설치(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) □ 소방시설 미설치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,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

20 . . .

대 표 자 성 명: (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
(사업주) 성　　명 :
　　생년월일 :

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수집·이용 목적	수집·이용 항목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	성명(사업장명)	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
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· 임금체불 등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여부 ·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 여부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	

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□동의합니다 / □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　　년　　월　　일

사업장명:　　동의자(사업주):　　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(영월출장소)장 귀하